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37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2016. 1. 1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별지1 '당초 처분'의 순번 1, 2, 4번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다만 세액은 별지2 '감액경정 후 잔존부분'의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및 2016. 5. 2. 원고에게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별지3 '증액경정 처분' 기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9. 분할 전 [redacted]구 B 공장용지 4,113㎡ 중 4,113분의 2,046.5 지분 및 위 토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389.41㎡ 중 5,389.41분의 2,681.6016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2008. 3. 1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이후 위 토지는 2008. 6. 17.경 2,066㎡ 부분이 C으로 분할됨에 따라 그 면적이 2,047㎡로 되고, 위 건물은 2008. 10. 9.경 2,375.92㎡ 부분이 분할되고 일부 부분이 멸실됨에 따라 그 면적이 합계 2,459.55㎡로 되었다), 2008. 10. 17. 위 건물 중 지상 1~3층 부분에 합계 1,013.45㎡를 증축하여 취득한 다음, 2008. 10. 28. 그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3. 17. 및 2008.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 본문의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6. 6. 8.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redacted]구 E을 소재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하여 2006. 7. 6. 구 기술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고, 2009. 3.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3층 319.78㎡ 부분에 관하여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여 2009. 4. 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건물 319.78㎡ 부분 및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한 건물 844.47㎡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에 따라 별지1 '당초 처분'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등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라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 중 첨단업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그 외의 업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2. 별지1 '당초 처분'의 순번 1, 2, 4번 기재 과세대상 중 일부 부분이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액경정하고(이에 따른 잔존세액은 별지2 '감액경정 후 잔존부분'과 같다), 별지1 '당초 처분'의 순번 3번 기재 과세대상에 관하여 과세 누락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별지3 '증액경정처분'과 같이 세액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별지1 '당초 처분'의 순번 1, 2, 4번 기재 과세대상에 관하여 2016. 1. 12.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른 잔존세액인 별지2 '감액경정 후 잔존부분'의 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 및 별지1 '당초 처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순번 3번 기재 과세대상에 관하여 2016. 5. 2. 이루어진 별지3 '증액경정 처분'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7.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3층 319.78㎡ 부분에 관하여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된 날인 2009. 4. 7.부터 신고·납부기간 3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9. 5. 8.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9. 5. 8.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282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8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한 때에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8. 2. 29. 및 2008.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은 점, 원고가 2009. 4. 7.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3층 319.78㎡ 부분에 관하여 D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에 관하여 D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5년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2012. 3. 1. 및 2012. 10. 18.부터 30일의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오흥록

판사 박재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별지1

당초 처분

(단위: 원)

순번	구분	적용 세율	과세 표준	세목	세액	세목	세액
1	[redacted] B 공장용지 4,113㎡ 중 4,113분의 2,046.5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5,389.41㎡ 중 5,389.41분의 2,681.6016 지분 (취득일: 2008. 2. 29.)	표준 세율	2,047,836,152	취득세	66,091,850	등록세	66,091,850
				농어촌 특별세	6,609,170	지방 교육세	12,399,220
2		중과 세율	1,095,583,000	-	-	등록세	70,717,680
				-	-	지방 교육세	13,267,050
3	[redacted] B 지상 건물 증축 부분 1,013.45㎡ (취득일: 2008. 10. 17.)	표준 세율	236,283,076	취득세	7,302,560	등록세	2,921,010
				농어촌 특별세	730,240	지방 교육세	546,390
4		중과 세율	431,490,389	-	-	등록세	10,668,490
				-	-	지방 교육세	1,995,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별지2

감액경정 후 잔존부분

(단위: 원)

순번	구분	적용세율	과세표준	세목	세액	세목	세액
1	[redacted]구 B 공장용지 4,113㎡ 중 4,113분의 2,046.5 지분 및 위 지상 건물 5,389.41㎡ 중 5,389.41분의 2,681.6016 지분 (취득일: 2008. 2. 29.)	표준세율	2,047,836,152	취득세	53,382,350	등록세	53,382,350
				농어촌특별세	5,338,220	지방교육세	10,014,840
2		중과세율	1,095,583,000	-	-	등록세	53,382,340
				-	-	지방교육세	10,014,840
4	[redacted] B 지상 건물 증축부분 1,013.45㎡ (취득일: 2008. 10. 17.)	중과세율	431,490,389	-	-	등록세	7,175,030
				-	-	지방교육세	1,342,1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별지3

증액경정 처분

(단위: 원)

순번	구분	적용 세율	과세 표준	세목	세액	세목	세액
3	[redacted] B 지상 건물 증축 부분 1,013.45㎡ (취득일: 2008. 10. 17.)	표준 세율	580,392,837	취득세	18,168,840	등록세	7,267,510
				농어촌 특별세	1,816,850	지방 교육세	1,360,6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과세표준)의 100분의 20(표준세율)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제23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6호: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과세표준)의 100분의 10(세율)

제7조(신고·납부 등)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 기술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5조(사후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및 지원을 받거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구 기업부설연구소법인의신고요령(2008. 8. 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신고요령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영리연구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8조(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7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취소 등)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소 또는 영리연구법인의 인정이나 전담부서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기업체·영리연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또는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인정 또는 확인요건에 미달되거나 2년이상 변경신고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8-08

하지 않아 협회장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술개발촉진법·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신고·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여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영리연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이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당해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에 대한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